

#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다.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하 “구미시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미시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

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5.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7.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경우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공공디자인의 자문 기준 등) ① 제8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
2.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경관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표준형 디자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8.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이 설계 변경 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 결과를 원안, 조건부, 재자문 세 가지로 결정하며, 자문을 의뢰한 시의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자문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전문가의 참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및 경관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③ 전문가의 위촉, 활동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5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8조제4호 관련)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 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보호 울타리(펜스),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서양식 정자), 음수대,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 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도로 및 건물/공공기관/보행 관련 방향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 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보도블록 등	
시각이미지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상기 각 호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2. 검토사항

- 상기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3. 자문 대상 기준

분 류	세 부 항 목	
	대 상	도로시설물
자 문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비 5천만원 이상
비 고	상기 사업비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 중 공공시설물 등의 취득비,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 및 제반 비용만을 말한다.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규격이나 재료, 디자인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관계법령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미래도시전략과
입 안 자	과 장	정 윤 호
	팀 장	문 송
	담 당 자	이 유 찬 (480-2594)